

경북대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, 케이티 간 사업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서

경북대학교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과 주식회사 케이티(이하 “양 기관”이라 한다)는 지역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 사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 및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[목적]

본 협약은 양 기관이 지역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 사업체에 대한 창업 지원과 사업모델 발굴, 사업화 지원을 통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 확립에 목적이 있다.

제2조 [기본원칙]

양 기관은 선의를 바탕으로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규정을 존중하며,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3조 [상호협력내용]

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.

- 농식품 푸드테크 기반 프랜차이즈 등 프랜차이즈 창업 컨설팅 상호 협력
- 지역 내 기술 사업화 및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보 공유와 홍보공간 협력
- 농식품 분야 생산-유통-소비 프로세스에 대한 AI/DX 기술 접목
- 지역 내 창업 및 사업 도약 지원을 위한 홍보 협력
- 관련 융복합 10차 산업 육성 등 기타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

제4조 [효력 발생 및 유효기간]

본 협약의 효력은 양 기관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,

양 기관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 [비밀유지]

-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(이하 “정보제공 당사자”라 한다)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정보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타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상호 간에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는 해제, 해지, 만료 기타 사유로 본 협약이 실효된 이후에도 [5]년간 그 효력을 유지한다.

제6조 [법적 구속력]

- ① 본 협약서의 내용은 제4조(비밀유지), 제5조(법적 구속력)를 제외하고 쌍방 간에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않는다.
- ②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도 본 양해각서의 목적달성을 위한 상대방의 업무협조 등의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업무협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제7조 [대외홍보]

양 기관은 공동 협력내용 및 사업 추진 결과를 외부에 홍보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, 양 기관의 공동 명의로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8조 [변경]

양 기관은 상호 합의를 통해 본 업무협약의 일부내용을 추가, 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있다.

제9조 [해석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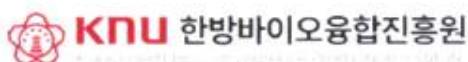
본 업무협약서의 해석에 대해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업무협약서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10조 [기타]

양 기관은 본 업무협약과 관련하여 신문보도,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상대 기관의 명의를 사용할 시 사전에 협의한다.

본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고 협약에서 정한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, 경북대학교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과 주식회사 케이티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기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3년 10월 31일



경북대학교

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

원장 황의욱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

대표이사 김영섭를 대리하여

대구/경북법인고객본부

본부장 서기홍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appearing to read "황의욱" (Hwang I-Wook).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appearing to read "김영섭" (Kim Young-seop).